

[별표 2] <개정 2013.9.9> [시행일:2014.1.1] 제2호과목
[시행일:2015.1.1] 제2호타목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1호	60	80	100
나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·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2호	100	140	200
다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1호	200	250	300
라.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2호	150	200	250
마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	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			

초과하여 소음·진동을 발생한 경우				
1) 소음원이 공장, 사업장, 확성기,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	20	60	100	
2)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	60	120	200	
바. 법 제2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			
1)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	100	140	200	
2)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	60	80	100	
사.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	100	140	200
아.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3호	100	140	200
자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5호	10	10	10
차.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6호			
1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 (A) 미만 초과한 경우	20	20	20	
2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	60	60	60	

(A) 이상 4dB(A) 미만 초과한 경우				
3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 (A) 이상 초과하거나 경 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 한 경우		100	100	100
4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(배 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		100	100	100
5)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		60	60	60
가.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7호	10	10	10
다.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3호	75	150	300
파.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·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4호	75	150	300
하.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8호	60	80	100
거.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제9호	60	80	100
너.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	법 제60조제2항제10호	60	80	100

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